

2023년도 경기도 에너지 분야 용자 안내

「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4조에 따라 2023년 경기도 에너지 용자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용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2월 10일

경기도지사

□ 용자대상

신재생 분야

- 200kW이하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려는 (사회적)협동조합 및 사업자로
 - 도내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자
 - 신재생에너지 인증 모듈,인버터를 설치할 자
- ※ '23. 1. 1. 이후 착공한 사업 (기 완공된 사업 제외)

효율화 분야

- 고효율에너지기자재*를 설치하려는 사업자(에너지사용자)로
 - 도내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설치하려는 자
 - 공고일 이후 사업을 착수하는 자
- ※ 고효율에너지기자재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

[지원 제외대상]
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
- 용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
-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고있는 자
- 설치대상을 완공하거나 가동 중인 자
- 동일 설비로 다른 기관 및 도의 용자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자

□ 지원내용

-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, 설치개수 공사비 및 시운전비 등 설치로 소요되는 총 사업비 일체(VAT 포함)
- 지원한도 : 설치자금의 90% 이내

□ 용자조건

- 용자금리 : 1.5% (변동금리)
- 지원규모 : **30억 원**
- 용자한도 : 신청자 당 최대 3.29억원
※ kW당 1,830천원 이하 지원
- 용자기간 : 8년(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)
- 취급은행 : KB국민은행
- 담보 등 : 취급은행 약관에 의함

□ 용자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**'23. 2. 13(월)~ 자금 소진시까지**
- 접수처 :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(방문.우편)
*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(김포시 김포한강11로455 김포환경에너지진흥원) 기후에너지사업팀

○ 구비서류 : 붙임 참조

※ 담보조건은 KB국민은행 협약조건에 따름

☎ 신청문의 :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(031-985-0292)
경기도 에너지산업과(031-8008-6013)

☎ 대출문의 : KB국민은행 도청점(031-248-6892)

붙임 1 용자지원 절차



※ 추천서 유효기간 3개월이며 대출 심사는 최소 2주이상 소요되므로 추천서 수령 후, 빠른 시일 내에 근처 국민은행 영업점 방문 요망

붙임 2

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

구분		제출서류		비고
신재생 분야	신청서	1-1	용자신청서 1부	필수(서식1)
	부대서류	1-2	사업계획서 1부	필수(서식2)
		1-3	정보공개 동의서 1부	필수(서식4)
		1-4	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1부	필수(서식5)
		1-5	경기도 에너지 용자지원에 대한 서약서 1부	필수(서식6)
		1-6	협동조합 (설립·변경) 신고확인증 1부	해당 시 제출 (서식8)
		1-7	사업자등록증 (사업자, 시공업체) 각 1부	필수
		1-8	발전사업허가증 사본(원본대조필) 1부	필수
		1-9	공사계획신고필증 사본(원본대조필) 1부	필수
		1-10	태양광모듈·인버터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1부	필수
		1-11	태양광발전시설 설계도(및 관련 증빙서류) 1식	필수
		1-12	공사계약서 1부	필수
		1-13	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(체납여부 확인)	필수
		1-14	시공업체 적정여부 검토를 위한 증빙서류 (ex. 최근 3년간 전기공사 실적 등)	필수
효율화 분야	신청서	1-1	용자신청서 1부	필수(서식1)
	부대서류	1-2	사업계획서 1부	필수(서식3)
		1-3	정보공개 동의서 1부	필수(서식4)
		1-4	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1부	필수(서식5)
		1-5	경기도 에너지 용자지원에 대한 서약서 1부	필수(서식6)
		1-6	사업자등록증(사업자, 시공업체) 각 1부	필수
		1-7	공장등록증 1부	해당시 제출
		1-8	기기 및 설치도면 1부	필수
		1-9	에너지절감량 산출 근거자료 1부	필수
		1-10	고효율기자재 인증서 1부	필수
		1-11	공사계약서 1부	필수
		1-12	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(체납여부 확인)	필수

※ [서식]은 에너지 용자지원사업 지침 참고

※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,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며, 제출서류 중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,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만 인정함

※ [서식9 ~ 11]는 용자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사업시기별로 제출하여야하는 서식임

- 용자사업 완료 시 [서식9], 사업계획 변경 혹은 주요 정보 변경 시 [서식10], 효율화분야 용자지원 사업 완료 시 [서식11]